

독일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Ein-Euro-Job'의 효과

이규영 (독일 카셀대학교 경제학 박사과정)

■ 머리말

2005년 1월부터 시행된 구직자기초보장을 위한 사회법전인 SGB II는 실업급여 III 수급자들인 취업능력이 있는 빈곤층과 실업자들에게 구직행위를 장려하고 노동시장 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하여 각종 사회급여를 제공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되었다. 이러한 각종 지원정책 및 사회급여 제공의 한 형태로서 소위 'Ein-Euro-Job(1-유로-일자리)'이라는 것이 있는데, 이는 SGB II 제16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해 실업급여 II 수급자들에게 공공근로사업에 참여하도록 유도하여 근로기회를 제공하고 그 대가로 추가적인 급여(보상)를 지급하는 것이다. 이 제도가 시행된 첫 해인 2005년에는 60만 명 이상이 그리고 2006년과 2007년도에는 각각 75만 명 이상이 Ein-Euro-

- 1) 참고로 실업급여 I과 실업급여 II의 차이점은 다음과 같다. 실업급여 I (Arbeitslosengeld I)이란 통상적으로 실업보험(Arbeitslosenversicherung)에서 실업자들에게 지급하는 급여이다. 여기서 실업자란 노동촉진(Arbeitsföderung)을 위한 사회법전 SGBIII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해 일시적으로 실업상태에 있거나, 지속적으로 고용기회를 찾고 있으며, 연방노동국의 직업알선노력에 적극적인 자로 정의된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을 충족시키는 실업자들은 실업급여 I를 받게 된다. 실업급여 II (Arbeitslosengeld II)란 취업능력이 있는 빈곤층에 대해 SGB II 제19조에 의거하여 지급하는 기초보장급여이다. 이는 2005년 1월에 도입된 'Hartz-IV' 법안에 의해 실시되었으며, 이 때문에 통상적으로 Hartz-IV라고도 불린다. 명칭상 실업급여라 불리고는 있지만, 실업급여 I과는 달리 실업급여 II를받기 위해서 실업상태를 전제로 하지는 않는다.
- 2) Betram Zwanziger,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ür Ein-Euro-Jobs, p. 1.

Job을 통한 공공근로사업에 참가하였다.3

Ein-Euro-Job 프로그램이 추구하고자 하는 법정책적 목표는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는 취업능력이 있는 빈곤층들을 Ein-Euro-Job을 통해서 다시 정규직 노동시장으로 복귀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참가자들의 근로능력을 향상시켜 노동시장으로 재편입할 수 있는 기회를 개선시키기 위한 것이다. 또한 이러한 공공근로사업을 통한일자리 및 근로기회의 창출은 참가자들의 사회적인 안정성을 촉진시킴과 동시에 자신의 근로능력과 관심분야에 대한 인식능력을 개선시키는 기능을 하게 된다. 다른 한편으로, Ein-Euro-Job은 참가자들의 근로준비 자세에 대한 평가수단으로서 이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실업급여 II의수급 여부에 대한 반대급부로서도 작용한다.

그렇다면 과연 이러한 Ein-Euro-Job의 목표가 실제로 달성 가능한가? 즉 Ein-Euro-Job이 실제로 정규직 고용복귀를 촉진시키는 데 기여하였는가, 혹은 프로그램 참가자들의 실업급여 II 수급을 종결시키는 데 기여하였는가? 따라서 본고에서는 이러한 문제 제기에 대해 IAB 연구소의 보고서에 기초하여 Ein-Euro-Job이 정규직 고용복귀 및 실업급여 II 종결에 미치는 효과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한다.

■ Ein-Euro-Job의 법적 · 제도적 근거

2005년 1월부터 SGB II가 시행됨에 따라 기존의 사회보장부조(Sozialhilfe)와 실업부조 (Arbeitslosenhilfe)를 통합한 형태인 일괄적인 구직자를 위한 기초보장(Grundsicherung für Arbeitssuchende), 즉 취업능력이 있는 빈곤층(erwerbsfähige Hilfsbedürftige)5)에 대한 지원정책이

- 3) Joachim Wolff & Katrin Hohmeyer, Wirkungen von Ein-Euro-Jobs, IAB-Kurzbericht, 2008. 02. p. 1.
- 4) Bundesargentur für Arbeit, Arbeitshilfe Arbeitsgelegenheiten zur Umsetzung des § 16 Abs. 3 SGB II, 2007.07.
- 5) 여기서 빈곤층이란 SGB II 제9조 제1항에 규정에 의해 자신의 소득이나 자산으로 생계를 유지하거나 자력으로 노동복귀가 어려운 사람들로 정의된다.

실시되었다. 이러한 새로운 법규정은 '원조(Födems)'와 '요구(Fordems)' 이라는 두 가지 기본 전 제하에서 대상자인 빈곤층들의 자발적인 참여와 자기책임을 강조하는 것이다. 이러한 구직자 기초보장법의 목적은 SGB II 제1조의 규정에 따라 취업능력이 있는 빈곤층들의 자기책임 능력을 강화시키고, 이를 통해 자신들의 생계를 자신의 능력과 수단으로 책임질 수 있도록 하는 데 기여하고자 함이다. 따라서 이 법의 시행을 통해 사회적인 도움을 필요로 하는 빈곤층 및 구직자들에 대한 광범위한 지원·장려정책이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정책들 중 하나가 바로 Ein-Euro-Job이다.

Ein-Euro-Job은 취업능력이 있는 빈곤층들에게 공공근로 성격을 갖는 근로기회⁷⁷를 제공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근로사업 참여자들에게 실업급여 II에 추가하여 그에 적당한 보상을 행하는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Ein-Euro-Job에 참여하는 것이 정식 근로관계(계약)를 형성하게 되는 것은 아니다. 다시 말하면, 정규직 일자리를 찾지 못한 실업급여 II 수급자들에게 추가적으로 공공근로 성격의 근로를 수행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다. 이를 통해 Ein-Euro-Job 참여자들은 임금을 받는 것이 아니라 실업급여 II에 추가하여 일정 보상금을 더 받는 형식이다. 그렇기 때문에 Ein-Euro-Job을 통한 추가적인 보상액 수준은 시간당 약 1~2 유로 정도이다. 또한 Ein-Euro-Job을 수행하는 평균 근로시간은 대략 주당 30시간 정도인데, 이는 참가자들이 여타 시간

- 6) '요구(Fordems)'란 SGB II 제2조 규정에 의해서 취업능력이 있는 빈곤층들의 의무사항을 나타내는 것으로서, 빈곤층들이 가능한 한 자신들의 빈곤을 벗어나도록 노력하며, 이를 위해 노동복귀를 위한 각종 정부시책에 능동적으로 참가하여야 함을 의미한다. 반면에 '원조(Fördems)'란 제14조 규정에 의해 취업능력 빈곤자들의 노동복귀를 촉진시키기 위해서 지급하는 현물/현금/서비스급여들을 말한 다. Sabine Lohmann, Ein-Euro-Job-Maß nahme zwischen Hilfe und Zwang, 2006, p. 20; Heribert Renn & Dietrich Schoch,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SGB II), 2. Aufl., pp. 37-43.
- 7) 공공근로 성격을 갖는 근로란 SGB III 제261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공공의 이익에 부합하는 근로형 태를 말한다. 예를 들어서 경제·사회적인 혹은 문화적인 사회기간시설 관리·개선 작업, 환경보호 및 사회복지 근로, 그리고 스포츠 및 문화 관련 근로작업 등을 말한다. Heribert Renn & Dietrich Schoch,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SGB II), 2. Aufl., p. 106.
- 8) Ein-Euro-Job이란 용어에서 보여지는 것과는 달리 실제로 시간당 추가보상액이 1유로라는 것은 아니다. 실제로 2005년도 추가보상액은 시간당 평균 1,25 유로였다. Johannes Münder (Hrsg.), Sozialgesetzbuch II: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Lehr-und Praxiskommentar, 2. Aufl., p. 270.

을 활용해 새로운 일자리나 직업교육 자리를 찾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Ein-Euro-Job 참여기간은 특별히 법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으며, 2005년도 참가자들의 경우 4분의 3이 반 년 이상 참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실업자들에게는 이미 SGB III 법에 의한 실업보험을 통해 기초보장이 행해지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근로기회를 제공하는 추가보상 방식은 일자리를 찾는 데 어려움이 많은 취업능력이 있는 빈곤층을 대상으로 주로 장려되고 있다. 주요 대상그룹으로는 25세 미만의 청장년층, 고연령자, 장기실업자, 그리고 망명자 및 여성들이다. 특히 25세 미만 청장년층 그룹은 여타 그룹에 비해 상대적으로 유리한 노동시장 재진입의 기회를 갖고 있기 때문에, 정책목표상 주요 적용 대상이 된다. 따라서 연방노동국은 이들 25세 미만 청장년층 그룹에 대해 3개월 이상 실업상태가 지속되지않도록 노력하고 있다.9

■ Ein-Euro-Job에 대한 정책이론적 고찰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단들은 정책을 통해 지원을 받게 되는 사람들에게 미래의 잠재적인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적절한 직무수행능력과 자격을 갖추도록 하여 현존하는 일자리와 구직자들 간에 존재하는 불일치를 조정하고 개선시키는 기능을 하는 것이다. 10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 활성화 정책을 통해 실업기간 동안 발생하게 되는 인적자원의 손실을 방지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여기에는 장기간 실업상태인 사람들이 Ein-Euro-Job을 실시함으로 인해 다시 정규근로 및 정규근로 과정에 적응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포함된다. 더우기 이러한 추가적인근로정책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것은 잠재적인 사용자들에게 참가자들의 근로복귀 준비 자세에대한 일종의 신호(signaling)를 주게 되므로 향후 노동시장에서 긍정적인 기능을 하게 된다.

- 9) Bundesargentur für Arbeit, Sozialgesetzbuch Zweites Buch-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Jahresbericht 2005, 2006
- 10) Tobias Hagen & Viktor Steiner, Von der Finanzierung der Arbeitslosigkeit zur Förderung von Arbeit, 2000.

그러나 Ein-Euro-Job이 항상 위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순기능만을 하는 것은 아니라, 참가자들의 노동시장 재복귀를 저하시키는 원치않는 부작용들도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부작용으로는 첫째, 참가자들이 Ein-Euro-Job에 참가하는 동안이나 참가하기 바로 이전에 근로노력에 덜 집중하게 되는 소위 '정체효과(Einsperreffekte)'가 발생할 수 있다. 즉 이러한 추가적인 근로정책 프로그램에 참가하는 동안 구직노력에 적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혹은 이러한 정책들을 마치 정규직 고용의 대체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이 발생할 수 있다. 다른 한편으로, Ein-Euro-Job이 빈곤층이나 실업자들과 같이 특정 문제가 있는 사람들만을 대상으로 실시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프로그램에 참가한 사람들이 노동시장에서 문제그룹으로 낙인찍히게 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따라서 실제적으로 Ein-Euro-Job을 통한 노동지원정책 프로그램이 참가자들의 고용기회를 개선시키는 데 기여하였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보다 구체적인 실증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 Ein-Euro-Job 참가자들의 구성

〈표 1〉은 2005년도 Ein-Euro-Job에 참가한 사람과 SGB II 법규정에 의한 실업자 비율을 연령별 · 국적별 그리고 직업교육 여부별로 구분하여 나타낸 것이다. 연령별 구분에서 특히 주목할만한 점은 Ein-Euro-Job이 주로 25세 미만 청장년층 그룹에서 집중적으로 실시되고 있다는 점이다. 비록 25세 미만 청장년층 그룹이 SGB II 법이 적용되는 실업자 현황에서 차지하는 비율이약 11% 정도밖에 되지 않지만, 2005년도에 Ein-Euro-Job을 참가한 비율은 약 25%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그림 1 참조). 이는 서독의 50세 이상 고연령층 실업자의 비율이 여성의 경우21.4%, 남성의 경우는 21.5%를 차지하고 있으나, 단지 15,3%(여성)와 14.5%(남성)만이 Ein-Euro-Job에 참가한 것과 비교했을 때 상당히 고무적인 결과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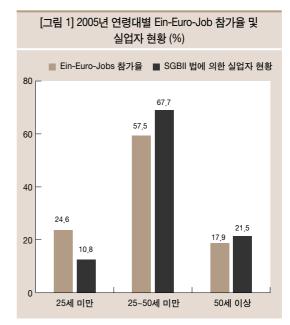
국적별로 살펴보았을 때, 인적특성상 노동시장에서 구직의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외국계 빈 곤층이나 구직자들의 Ein-Euro-Job 참가율은 그들의 실업률 수준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즉 정규직 노동시장 진입이 상대적으로 낮아서 더욱더 Ein-Euro-Job과 같은 프로그램을 통해 지원을 받아야 될 대상그룹임에도 불구하고, 이들의 Ein-Euro-Job 참여도는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표 1〉 2005년도 Ein-Euro-Jok	참여와 SGBII 법에	의한 실업자 현황
---------------------------	--------------	-----------

		Ein-Euro-Jobs 참여				SGBII 법에 의한 실업자 현황			
		동독		서 독		동독		서 독	
		남성	여 성	남성	여 성	남성	여 성	남성	여 성
	전체	158,564	129,321	207,982	107,988	457,383	376,594	882,041	685,975
연	25세 미만	26.5	21.0	25.1	25.2	11,3	10.8	10.4	10.8
령 별 (%)	25~50세 미만	52.6	57.6	59.6	60.4	67.5	66.9	68.2	67.7
	50세 이상	20.8	21.5	15.3	14.5	21.2	22.4	21.4	21.5
국	독일	96.1	96.1	86.3	88.1	91.0	91.8	76.5	76.7
적 별	외국인	3,8	3,8	13.5	11.7	8.7	7.9	23.1	22.5
(%)	기타	0.1	0.1	0.2	0.2	0.3	0.2	0.4	0.8
직업교육 여부별(%)	식업교육 미실시	36.0	28.9	61.5	58.8	32.9	32.2	56.4	63.2

출처: Wolff & Hohmeyer, Wirkungen von Ein-Euro-Jobs, IAB-Kurzbericht, p. 3.

마지막으로, 노동시장으로 재진입할 기회가 상대적으로 낮은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여성 실업자들의 경우 서독에서 63.2% 그리고 동독에서 32.2%를 차지하고 있지만, 이들의 Ein-Euro-Job 참여 비율은 58.8%(서독)와 28.9%(동독)으로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종합적으로 정규직노동시장으로의 재복귀에 문제가 있는 그룹들인 고연령 실업자, 외국인 및 직업교육을 이수하지 못한 여성그룹들에 대해서 Ein-Euro-Job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저조한 실정이다.



출처: Wolff & Hohmeyer, Wirkungen von Ein-Euro-Jobs, IAB-Kurzbericht, p. 1.

■ Ein-Euro-Job이 정규직 고용복귀 및 실업급여 II 수급에 미치는 영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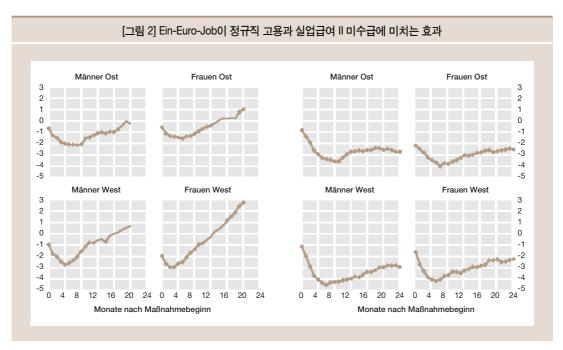
Ein-Euro-Job을 통해서 취업능력이 있는 빈곤자 및 실업자들이 단기 혹은 중장기적으로 정 규직 노동시장에 재진입할 수 있을 것인가? 한편, 이를 통해 참가자들이 더 이상 실업급여 II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자신들의 빈곤성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을 것인가? Ein-Euro-Job이 정규직 고용복귀 및 실업급여 II 수급 여부에 미치는 영향을 살펴보기 위해서, 이하에서는 IAB 연구소의 Hohmeyer & Wolff의 실증분석 연구 결과를 중심으로 고찰해 보도록 한다.

Hohmeyer & Wolff (2008)¹¹⁾는 개인의 인적특성(성, 연령, 지역, 가족사항, 직업교육수준 등) 뿐만 아니라 고용 및 실업 기록까지 포함하는 '통합고용데이터(IEB)'의 표본추출 자료를 사용하여 Ein-Euro-Job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이 표본데이터에는 2005년 1월 31일에 실업자로 신고하여 실업급여 II를 받는 사람들과 2005년 2월과 4월 사이에 Ein-Euro-Job을 실시하고 있는 사람들이 포함되었다. 그들은 Ein-Euro-Job이 미치는 영향을 지역 별(동ㆍ서독) 및 성별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는데, 그 실증분석 결과는 [그림 2]와 〈표 2〉에 나타나 있다.

노동시장 재진입 효과(Eingliederungseffekte)

다음의 [그림 2] 왼쪽 그래프들은 Ein-Euro-Job 참여자들의 정규직 고용으로의 복귀, 즉 노동시장 재진입 효과를 나타낸다. 이 그래프에 의하면 Ein-Euro-Job을 실시한 초기 몇 개월 동안은 참가자들의 정규직 고용기회가 더욱 낮아졌으며, 이는 4~6개월차에 가장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는 Ein-Euro-Job에 참가하는 동안 참여자들이 구직노력에 적은 시간을 투자하거나 혹은이러한 정책들을 마치 정규고용의 대체수단으로 인식하는 경향으로 인해 발생하는 '정체효과 (Einsperreffekt)' 때문인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로 인한 고용율 감소는 동독 여성들의 경우 약

11) Katrin Hohmeyer & Joachim Wolff, Who is targeted by One-Euro-Jobs: A Selectivity Analysis, IAB-Discussion Paper, 8/2008.



출처: Wolff & Hohmeyer, Wirkungen von Ein-Euro-Jobs, IAB-Kurzbericht, p. 5.

2% 이하로 서독 여성들의 경우 약 3% 정도로 나타났다. Ein-Euro-Job에 참가한 6개월 이후부터는 정체효과가 줄어들면서 정규직 고용으로의 복귀가 점차적으로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20개월차의 정규직 고용복귀 효과를 살펴보면, 여성 참가자들에게서만이 양(+)의 노동시장 재진입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여성 참가자들의 경우 동독에서는 약 1%의 그리고 서독에서는 약 3%의 정규직 고용복귀률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남자들의 경우 이와는 정반대로 이러한 고용복귀 효과가 거의 나타나지 않았다.

실업급여 II 수급에 미치는 효과

Ein-Euro-Job에 참가 여부가 [그림 2] 오른쪽 그래프에서 보여지듯이 참가자들의 빈곤성의 극복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in-Euro-Job에 참가한 지 2년차에 실업 급여 II를 더 이상 받지 않아도 될 만큼 자신들의 빈곤성을 벗어난 참가자들의 비율은 오히려 약 2~3% 정도 낮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개별 인적특성별 효과 분석

다음의 〈표 2〉는 노동시장 재진입(정규직 고용복귀) 효과를 다양한 개별 인적특성별로 나누어 분석한 결과를 나타낸다. 우선 연령별 구분에 따른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25세 미만 청장년층 그룹의 경우 20개월여에 걸친 Ein-Euro-Job 실시를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효과가 대부분 음(-)으로서 비효과적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단지 25세 미만 서독 여성그룹에게만 +0.9%로 효과적인 것으로 나타났으나,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는 아니었다.

반면 24세 이상 연령층인 서독의 남녀 그룹과 동독의 여성그룹에게는 Ein-Euro-Job 참가를 통한 노동시장 재진입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이러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지원 정책이 50세 이상의 참가자 그룹에게는 양(+)의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며, 동독의 50세 이상 남성 참가자 그룹을 제외하고는 모두 통계적으로 유의한 결과를 나타냈다.

참가자 그룹을 국적별 · 이민여부별로 구분하여 분석한 경우, Ein-Euro-Job이 노동시장 재진입에 미치는 효과는 그리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서독 여성참가자 그룹에서 이민독일계 여성들의 경우 20개월 동안의 Ein-Euro-Job 참가를 통해 정규직 고용으로의 진입효과가 +6.8%로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도 매우 유의한 결과였다.

다음으로는 직업교육 수준별 분석 결과를 살펴보도록 한다. 직업교육 수준은 ① 직업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 (미직업교육), ② 사업장 내·외 직업교육 및 직업전문학교 졸업(중급직업교육), ③ 고급직업교육 졸업의 세가지 수준으로 구분되었다. 동독 남성참가자 그룹의 경우 Ein-Euro-Job 참여가 노동시장 재진입에 미치는 효과가 모든 직업교육 수준별 그룹에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동독과 서독 여성참가자들의 경우 직업교육이 ①과 ②인 그룹간에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않았지만, 고급직업교육 수준이 ③인 그룹과의 차이는 약 2~3% 가량으로 더욱 크게 나타나고 있다. 서독 남성참가자들 중에서는 단지 중급직업교육 수준을 가진 그룹에서만 유의적인 노동시장 재진입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지역별 실업률의 정도에 따른 분석에서는 노동시장 재진입효과가 분명하게 나타나진 않았다. 마지막으로 참가자 그룹 중에서 바로 전년도인 2004년도에 정규직 고용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20개월 동안의 Ein-Euro-Job에 참여가 노동시장 재진입에 미치는 효과가 전체적으로 음 (-)로 나타났다. Ein-Euro-Job이 미치는 효과는 오히려 2004년도 이전에 정규직 고용상태에

〈표 2〉 20개월의 Ein-Euro-Job 참가가 정규직 고용복귀에 미치는 효과

		동독			서 독				
		남성		여 성		남성		여 성	
		참가자수	효과(%)	참가자수	효과(%)	참가자수	효과(%)	참가자수	효과(%)
	전체	21,267	-0.3	19,111	1.0***	20,968	0.6	9,470	2.7***
연령별	15-24세	5,804	-0.4	3,339	-0.6	4,582	-1.5	2,109	0.9
	25-35세	3,527	-1,1	3,314	1.5	5,023	1.0	2,137	4.3***
	36-50세	8,735	-0.9*	8,977	1.1**	8,836	1.4***	4,148	3.0***
	51-62세	3,913	0.3	3,474	1.5**	2,537	1.5*	1,074	2.2*
	독일계	20,241	-0.3	18,212	0.8**	16,920	0.7*	7,881	2.2***
	이민독일계	414	-1.6	347	0.6	1,281	-1.2	548	6.8***
국적별 · 이민 여부별	외국인	597	-0.8	546	-0.7	-	-	-	-
	구소련계	-	-	-	-	459	0.3	225	-2.6
	터키계	-	-	-	-	881	1,2	280	1.0
	기타	-	-	-	-	1,413	2.1	520	2,9
직업 교육 여부별	비직업교육	6,513	0,3	4,529	0.2	12,238	0.3	5,159	2.5***
	중급직업교육	14,019	-0.9*	13,293	0.9*	8,053	1.7**	3,692	2.6**
	고급직업교육	730	0.9	1,285	3.0*	681	-0.9	618	4.3**
지역별 실업률	낮음	5,798	-0.9	4,663	0.0	5,722	0.8	2,439	3.0***
	낮음부터 중간	5,009	-0.3	4,349	1.4**	4,882	0.3	2,248	2.0*
	중간부터 높음	4,795	-0.8	4,701	0.8	5,145	0.2	2,210	1.9*
	높음	5,656	-0.8	5,385	1,2**	5,213	1.5**	2,556	3.7***
과거 최근	2004	2,929	-3.1**	1,844	-2.3	3,958	-3.0**	1,596	-1.5
	2001~2003	7,247	-0.6	4,622	1.3	8,967	1.8***	3,616	2.7***
정규직 고용	1992~2000	7,826	0.8*	8,977	2.1***	4,664	1.7***	1,810	5.8***
연도	1992 이전	3,259	1,2	3,652	0.9	3,368	0.7	2,445	3.2***

주: 1) 2005년 1월 실업률: 낮음(동독) < 21%, 낮음(서독) < 10.5%, 21%<낮음부터 중간(동독) < 22%, 10.5%<낮음 부터 중간(서독) < 12%, 22%<중간부터 높음(동독) < 23.5%, 12%<중간부터 높음(서독) < 14.5%, 높음(동독) > 23.5%, 높음(서독)>14.5%

출처: Wolff & Hohmeyer, Wirkungen von Ein-Euro-Jobs, IAB-Kurzbericht, p. 6.

^{* 10%} 유의도, ** 5% 유의도, *** 1% 유의도.

있었던 참가자 그룹에게서 보다 더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나 여성 참가자들 중에서 1992~2001년 동안 정규직 고용상태에 있었던 사람들의 경우 노동시장 재진입의 효과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났다. 동독 여성들의 경우 이러한 재진입 효과가 약 2% 정도인 반면 서독 여성참가자 그룹의 경우 약 6% 정도로 높게 나타나고 있다.

■ 맺음말

결과적으로, 20개월 동안의 Ein-Euro-Job 참여 여부가 몇몇 특정 참가자그룹에게는 정규직으로의 고용복귀를 증대시키고 고용능력을 향상시키는 데 일정 부분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렇지만 2년여에 걸친 Ein-Euro-Job 참여가 실업급여 II 수급자들인 취업능력이 있는 빈곤층과구직자들에게 실업급여 II를 받지 않아도 될 정도로 그들의 빈곤성을 벗어나도록 하는 데에는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마찬가지로 Ein-Euro-Job에 참가하기 바로 이전 연도에 정규직 고용상태에 있던 사람들에게는 정규직 노동시장 재진입 여부에 그리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물론 본 분석에 사용된 표본데이터의 특성상 Ein-Euro-Job이 시행된 바로 초기 참가자들의 정보만을 가지고 분석한 것이기 때문에, 일정 부분 제도 초기 시행단계에서 나타나는 시행착오들이 결과에 반영된 것일 수도 있다. 제도 시행이 어느 정도 정상 궤도에 진입한 현 시점에서는, 그동안의 시행착오들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을 것이고, 그동안 Ein-Euro-Job에 참가한 사람들에 대한 사례조사를 통해 참가대상자 선별에 있어서 보다 더 적절한 기준들이 마련되었을 것이다. 따라서 향후에도 이러한 노동시장 활성화를 위한 각종 정책들이 실제로 지원을 필요로 하는 빈 곤층이나 구직자들에 대한 지원수단으로서 기능을 하게 될지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관심과 연구가 필요하다고 보여진다.

참고문헌

- Bundesargentur für Arbeit, Arbeitshilfe Arbeitsgelegenheiten zur Umsetzung des § 16 Abs. 3 SGB II, 2007.07.
- Bundesargentur für Arbeit, Sozialgesetzbuch Zweites Buch-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Jahresbericht 2005. 2006.
- Eicher, Wolfgang & Spellbrink (Hrsg.), Wolfgang, SGB II: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Kommentar, Verlag C.H. Beck München, 2005.
- Hohmeyer, Katrin & Wolff, Joachim, Who is targeted by One-Euro-Jobs: A Selectivity Analysis, IAB-Discussion Paper, 8/2008. (http://doku.iab.de/discussionpapers/2008/ dp0808.pdf)
- Lohmann, Sabine, Ein-Euro-Job-Maßnahme zwischen Hilfe und Zwang, Peter Lang Verlag, 2007.
- Münder, Johannes (Hrsg.), Sozialgesetzbuch II: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Lehr-und Praxiskommentar, 2. Auflage, 2007.
- Renn, Heribert & Schoch, Dietrich, Grundsicherung für Arbeitsuchende (SGB II): Das neue Sozialleistungsrecht für hilfebedürftige erwerbsfähige Personen, 2. Auflage, Nomos Verlagsgesellschaft, 2007.
- Rothkegel, Ralf (Hrsg.), Sozialhilferecht, Nomos Verlagsgesellschaft, 2005.
- Wolff, Joachim & Hohmeyer, Katrin, Wirkungen von Ein-Euro-Jobs: Für ein paar Euro mehr, IAB-Kurzbericht, 2/2008. (http://doku.iab.de/kurzber/2008/kb0208.pdf)
- Zwanziger, Betram, Rechtliche Rahmenbedingungen für Ein-Euro-Jobs, Arbeit und Recht, 1/2005.
- Hagen, Tobias & Steiner, Viktor, Von der Finanzierung der Arbeitslosigkeit zur Förderung von Arbeit, 2000.